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6년 6월 17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
(영문명) SHINYOUNG REAL ESTATE TRUST CO., LTD.
(홈페이지) <http://www.shinyoungret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, 8,9층(여의도동, 신영증권빌딩)
(전 화) 02-6256-7800

대 표 이 사 : 박 순 문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경영지원부문장
(성 명) 임 성 식 (전 화) 02-6256-7920

작 성 자 : (직 책) 경영기획부장
(성 명) 이 승 택 (전 화) 02-6256-7922

제 출 이 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6-6-2호)

소송 등의 판결·결정

1. 사건의 명칭	2026가합3952 손해배상(기)
2. 원고·신청인	1. 군자새마을금고 2. 새마을금고중앙회 3. 화성새마을금고 4. 성남제일새마을금고 5. 성남동부새마을금고 6. 군포새마을금고 7. 고양동부새마을금고 8. 의정부중앙새마을금고 9. 의정부동부새마을금고 10. 화산새마을금고
3. 판결·결정내용	- 화해권고결정 · 피고(당사)는 위탁자(차주)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(약 213억원)를 대위변제 · 원고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 (대출채권 포함)을 포함한 담보권을 피고(당사)에 양도
4. 판결·결정사유	- 관할법원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
5. 관할법원	서울중앙지방법원
6. 판결·결정일자	2026. 05. 28. (확정일 2026. 06. 17.)
7. 확인일자	2026. 06. 17.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 본 건은 2026. 02. 11.에 제기된 고양시 화정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 관련 당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관련 소송 건임 - 당사는 관할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응할 예정이며, 이로써 해당 소송은 종결될 예정임 - 대위변제금액은 신탁재산의 분양 및 임대 등을 통하여 회수 진행 중임 - 해당 건 신탁재산의 평가금액을 고려하여 충당금을 기 설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임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(가처분 포함) 등의 판결·결정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.
- 주2) “판결·결정사유”는 소송의 포기·취하·인낙·화해, 판결, 결정, 명령, 신청철회 등 사건이 종료된 원인을 기재한다.
- 주3)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판결·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